해 양 수 산 부
주 의 요 구

제　　목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남해군

내　　용

남해군은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하여 어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평시 어획물 인양 등에 활용하여 어업인들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의제공을 위해 [표 1]과 같이 어업기반시설사업 중 어업기반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다목적인양기 설치 현황

연도	사업비(백만원)			설치 현황
	계	국비	지방비	
계	1,554	777	777	27대
2013	720	360	360	15대(곤유항 등 15개소)
2014	344	172	172	5대(와현항 등 5개소)
2015	490	245	245	7대(장항항 등 7개소)

1. 어항시설 사용 협의 없이 다목적인양기 설치

「어촌·어항법」 제38조에서는 어항시설(선착장, 물양장 등)을 사용하거나 점용 할 때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항관리청은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할 때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면 어항관리청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남해군은 선착장, 물양장 등에 다목적인양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항관리청에 사전협의를 통해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설치장소 및 시기 등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남해군은 어항관리청에 협의 없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27대의 다목적인양기를 설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어항시설 및 국유재산에 무분별한 인양기 설치로 어항시설 개발계획 중복·간섭과 어항·수변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2. 하자보수증권 징구 추진 소홀

「어업기반정비 사업시행지침」 중 '어업기반정비 사업비 등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업비 집행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용비는 인양기 설치와 보수·보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제70조, 제70조에 따르면 공사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하자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공사의 준공검사 또는 납품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최종지출 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하자보수보증금(증권)을 제출받은 후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남해군은 인양기설치 사업추진시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설치공사를 준공하였을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률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증권을 준공금 집행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그러나 남해군은 2013년도 15대의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에 대하여 하자담

보책임기간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하자보수보증금(증권)을 제출받지 않고 사업비를 집행하였다.

감시기간 중 확인 결과,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하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약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시공업체와의 다툼 또는 하자보수를 인한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을 것이다.

조치할 사항 **남해군수는**

향후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항시설 점용 협의, 하자보수기간 설정 등 관련 행정절차 준수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